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846
----------	-------

발의연월일 : 2025. 7. 30.

발 의 자 : 송재봉 · 조계원 · 강득구
서영교 · 최혁진 · 이재관
이병진 · 양부남 · 박지원
임미애 · 김문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가 대부분 민간업체들에게 맡겨져 있어서 폐기물처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장폐기물 처리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과 매립·소각(소각에 준하는 유해 재활용 포함)을 구분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장폐기물 매립·소각시설부터 사업주체를 최소한의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주체로 제한하며, 생활폐기물에 적용되는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사업장폐기물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음.

이에 환경부로 하여금 5년을 주기로 폐기물처리시설 확보·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와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며, 중간처분(소각)과 최종처분(매립)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재활용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폐기물 처리의 안전성·공공성·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 2제1항, 제4조제3항,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4조의2·제25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재봉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18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최소화하여야 한다”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협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폐기물은 최대한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 중 “지정폐기물”을 각각 “사업장폐기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폐기물처리시설 확보·정비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2. 폐기물의 발생·처리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전국 및 시·도별 폐기물처리시설의 수요 및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노후 및 사용종료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정비를 위한 재원조달계획

6.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의3을 제5조의4로 하고,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제5조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을 세분화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외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으로 사업장폐기물이 반출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의4(중전의 제5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반입하여”로 한다.

②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이 반입되도록 협의한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의 제목 “(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업)”으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를 “수집·운반·재활용을 업(이하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재활용업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을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총 연장기간 1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을 “총 연장기간 1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5조의5제2항 각 호”로, “같은 항 제1호”를 “제5항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폐기물처리업의”를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업의”로, “폐기물처리업자”를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처리업자”를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수집·운반 또는 처분”을 각각 “수집·운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제2호 및 제3호 중 “폐기물처리업”을 각각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 중 “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2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5(폐기물 처분업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중간처분, 최종처분, 종합처분 및 유해재활용을 업(이하 “폐기물 처분업등”이라 한다)으로 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인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폐기물 처분업등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 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방법
2.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 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 처분하는 방법
3.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 시설 및 최종처분 시설을 갖추고 폐기물등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4. 유해재활용업: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유해성 등에서 제1호의 폐기물 중간처분업과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폐기물 재활용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③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 허가신청, 폐기물 운반, 명의

대여 금지, 준수사항, 변경허가 등에 대해서는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제8항, 제9항,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의 기간 중 “2년”은 “3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이 폐기물 처분업등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① 사업자는 제품의 생산 방식 등을 개선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u>최소화</u> 하여야 한다.	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① ----- ----- ----- ----- <u>최소화</u> <u>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협력하여야 한다.</u>
② ~ ⑥ (생략) <u><신설></u>	② ~ ⑥ (현행과 같음) <u>⑦ 폐기물은 최대한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u>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생략) ③ 국가는 <u>지정폐기물</u> 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u>지정폐기물</u> 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사업장폐기물</u> ----- ----- <u>사업장폐기물</u> ----- ----- -----.
④ (생략) <u><신설></u>	④ (현행과 같음) <u>제4조의2(폐기물처리시설 확보 ·</u>

<신 설>

정비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2. 폐기물의 발생·처리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전국 및 시·도별 폐기물처리시설의 수요 및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노후 및 사용종료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정비를 위한 재원조달계획

6.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의3(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

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① (생략) <u><신설></u> ② 반입협력금은 환경부령으로	처리) 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제5조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을 세분화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외의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으로 사업장폐기물이 반출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의4(반입협력금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이 반입되도록 협의한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
--	--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생 략)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반입하여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5조(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업) ① -----수집·운반·재활용을 업(이하 “폐기물수집·운반·재활용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재활용업은 제외한다)-

② -----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 4.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

1.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업-----

2. ~ 4. (현행과 같음)

③ -----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

-----.

④ -----

-----총 연장
기간 1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
는 총 연장기간 6개월)-----

-----.

⑤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
업-----
-----.

<삭 제>

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 7. (생략)

⑥ 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2. ~ 4.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⑥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5조의5제2항 각 호-----

-----제5항제1호-----

-----.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6. (생략)

⑦ -----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업-----

-----.

⑧ -----폐기물 수집
-----·운반·재활용업의-----
-----폐기물 수집·운
-----반·재활용업자-----

-----.

⑨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
업자-----
-----.

1. ~ 6. (현행과 같음)

⑩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집·운반 또는 처분
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⑪ ~ ⑬ (생략)

⑭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
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
·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시·
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 것
으로 본다.

1. (생략)

2.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
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를 받은 경우

3. 제1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
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
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⑩ -----수집·운반-----

-----.

⑪ ~ ⑬ (현행과 같음)

⑭ -----

-----.

1. (현행과 같음)

2. -----
-----폐기물 수집·운반·재
활용업-----

3. -----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업-----

⑮ 지정 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4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신청,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⑬ (생략)

⑪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
고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
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
른 재활용단지에서 폐기물처

⑮

폐기물 수집 · 운반 · 재활용
업

⑬ (현행과 같음)

⑪ 폐기물 수집 · 운반 · 재활용
업

<작 제>

2. -----

-----폐기물 수

리업을 하려는 자

3.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
을 하려는 자

<신 설>

집·운반·재활용업-----

3.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25조의5(폐기물 처분업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중간처분, 최종처분,
종합처분 및 유해재활용을 업
(이하 “폐기물 처분업등”이라
한다)으로 하기 위하여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
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
관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
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

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인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폐기물 처분업등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 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방법

2.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 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 처분하는 방법

3.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 시설 및 최종처분 시설을 갖추고 폐기물등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4. 유해재활용업: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유해성 등에서 제1호의 폐기물 중간처분업과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폐기물 재활용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③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 허가신청, 폐기물 운반, 명의대여 금지, 준수사항, 변경허가 등에 대해서는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제8항, 제9항,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의 기간 중 “2년”은 “3년”으로 한다.